##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97

발의연월일: 2021. 6. 4.

발 의 자:최형두·강기윤·권명호

김성원 · 김영식 · 박성민

엄태영 · 이종성 · 정운천

태영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음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 진흥 등 관련 권한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,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'특별자치시장'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중 "광역시장·도지사"를 "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농	제2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	
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	
흥청장, 소속 기관의 장, 특별	
시장· <u>광역시장·도지사</u> ·특별자치	<u>광</u> 역시장·특별자치시
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	<u>장·도지사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